[양식 제23호]

국 적 취 득 신 고 서 (^월 ^{일)}

※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				E/								
① 국 적 취 득 자	국전	석취득	전에 가졌던	국적								
		부	성 명	(성)	/ (명)			국 적				
		T	주민등록번호	5	_	-		(등록기	준지)			
	모		성 명	(성)	/ (명)			국 적 (등록기준지)				
			주민등록번호	5	_	-						
	배우자		성 명	(성)	/ (명)			국 적				
	-11	1 1 7 1	주민등록번호	5	_	-		(등록기준지)				
	(록기준지 계등록창설지)									
	주 소											
	 성	외국 (한자포		(성) / (명)		본		성별	성별 [1]님		20	뉙
	명	원지음 한글표	의 (정) /(명)		(한자)			주민등 번	록호		_	
②신	[분에	관한	사항									
③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							년	월		일		
④기타사항												
		성명	@			서명	서명 주민등록번			_		
⑤신.	고인	자격	①보인 ②법정대리			인 ③기타(자격			月:)			
		주소				전화				이메일		
⑥제출인		성명			주민	등록	f번호			_		

^{*}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작 성 방 법

- * 본 신고서는 2008. 8. 31.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(국적법 제3조), 국적의 재취득(국 적법 제11조),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(국적법 부칙 제7조) 등을 원인으로 하 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.
- ①란: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(등록기준지)란에 등록기준지 를 기재합니다.
 - :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 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 - :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(한자포함)란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(한자포함)로 기재하여야 합니다(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). 다만, 우리나라 가족관계(폐쇄)등록부나,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.
 - :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 기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우리나라 가족관계(폐쇄)등록부나,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 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. 한 편,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(예: 거민신분증, 호구부 등)에 의하여 조선족임 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 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.
 - : 국적취득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(한자)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②란: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③란: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○○년 ○월 ○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, ○○ 년 ○월 ○일 국적재취득신고, 또는 ○○년 ○월 ○일 국적취득특례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.
- ④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(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을 고시한 관보 등).
- 2.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.
- ※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3. 국적취득자 본인이나 그의 부(父)·모(母)·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 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